
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주요내용

2010. 4.

개정 수협법 주요내용

가. 추진배경 및 경위

- 수협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협법 개정 추진('08~)
- 전문경영인체제 및 경영정상화 기반 구축 등 '수협개혁위원회' 건의사항을 반영한 수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('09.4.30)
-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('10.2.23~24), 상임위('10.2.25) 및 법사위('10.2.25), 국회 본회의('10.3.18), 대통령 재가('10.4.7) 및 공포(4.12)

나. 주요 개정내용

< 중앙회 관련 >

- 회장 비상임화, 인사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지도·경제사업 부문 통합 등 전문경영체제 확립
 - 중앙회장은 비상임화 및 연임제한으로 대외적 대표 역할에 전념
 - 비상임 중앙회장 권한은 교류협력사업 등 상징적 대외적 역할에 전념하고 실질적인 경영권 배제
 - 회원의 경영지도 및 조사·연구사업의 권한을 부여하되, 지도 경제대표이사에게 위임처리토록 함
- * 농협은 '04년부터 회장이 비상임임에도 회원조합 지도권한을 직접 수행

- 인사 공정성 확보 및 전문경영인 유치 위해 **인사추천위원회 설치**
 - 위원회 구성 등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 구성·운영은 정관규정
 - 지도경제대표이사, 감사위원 3명, 사외이사 2명, 조감위원 2명 등 추천
 - 인사추천위원회(5명) : 조합장 3, 외부인사 2
 - * 농협 인사추천위원회(7명) : 조합장 4, 외부인사 3(법률에 명시)
 - * 현행 수협법의 경제대표이사 추천위원회도 5명으로 구성되며, 2명은 정부위촉, 3명은 조합장으로 구성

○ **지도·경제사업 부문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**

-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, 대표이사 경영평가·해임 요구권 등을 부여하여 **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**
-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**교육위원회 설치**
- 중앙회 공적자금을 출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
- 중앙회 자본확충을 위해 일선수협이 우선출자 가능

- 지도경제사업부문이 신용사업부문에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출자가능(현행은 100분의 20으로 제한)

< 일선수협 관련 >

- 경영이 부실한 일선수협 조합장의 비상임 의무화**

- 경영 정상수협은 조합장 비상임 여부 선택권 부여, 부실수협(MOU 목표 2회 연속 미이행) 조합장은 비상임화

□ 임원 자격의 합리적 조정

- 조합원에게 상임이사 자격 부여 등 상임이사 자격 완화 및 선출절차 개선
 - 조합장이 비상임인 조합의 상임이사는 인사추천위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(현행 : 조합장이 이사회 동의 후 추천)
 - 정상조합은 현행 선출방법 또는 인사추천위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중 선택 가능
- 수협 등 금융기관에 일정규모 이상 금융채무 연체자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자의 임원자격을 제한

□ 합리적인 조합운영을 위한 제도개선

- 조합장 궐위시 상임이사나 전무가 직무대행(종전 비상임이사)
 - 상임이사 궐위시에도 간부직원이 직무대행으로 업무파행 최소화
 - 조합의 대의원은 타조합이나 농협 등의 임직원 겸직 제한
 - 조합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음
 - 이사회 의결시 이해관계자의 의결참여 제한
 - 조합장이 조합경비로 축·부의금을 허용하되(3만원 한도) 하며, 조합명의로 해야 함
- 조합원들의 조합사업 이용도 제고를 위해 잉여금 배당순서 개선(출자배당 우선 → 이용고 배당 우선)

다. 향후 추진계획

-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, 정관 등 고시 9개) 마련('10. 9월)
- 개정 수협법 시행(공포후 6개월, 10월 13일)

新수협운동 추진 계획

2010. 4.

수협중앙회

新수협운동 추진 계획

1 추진 배경

-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2009년 선진화 계획 실천에 이어 금년부터 수협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수협개혁운동 전개
 - '09년 수협선진화 T/F 종료 후 금년부터 新수협운동 추진 결정
- 2009년 국정감사 및 수협법 개정 논의시 공적자금 상환에 필요한 자체재원 마련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진 요구

2 新 수협운동 추진 과제

《 과제선정 원칙 》

- ◆ 수협 경영개선 및 임직원 의식개혁에 필요한 과제
 - ◆ 정부의 신수산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
- ⇒ 대과제 10개, 소과제 42개 선정 《별첨 1 참조》

가 경영정상화 추진 과제

□ 공적자금 조기상환 자구노력

- 자체자금 700억원 이상 마련을 위해 임직원 출자, 지도사업 부문 출자, 회원조합 우선 출자 등 추진

구 분	임직원	지도부문	회원조합	수산단체·회사
최소목표액	110억원	350억원	200억원	40억원

※ 지도사업부문 출자방안 이사회 의결('09. 11)

-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**중앙회 연수원(430억)** 등 고정자산 매각 및 임직원 급여(3~20%) 반납, 성과급(30%) 및 퇴직수당(80%) 감축 지속 추진

※ 고정자산 매각 : 연수원 등 12건 552억원

- 연수원 매각공고 : (1차) '10. 3. 20 → (2차) '10. 4. 9

※ 급여반납 목표 및 실적 : 목표('12까지) 110억원 / 실적('09~'10.3월말) 16억원

- 기타 보유자산 매각(농수산홈쇼핑 주식 48만주, 24억원) 추진

□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추진

- 동해·삼척·장흥 등 5개 부실조합은 2013년까지 통폐합 추진
 - 완도군수협은 계약이전을 완료하고 흑산도수협 합병명령('09.10.6)으로 신안군수협과 통폐합 추진중

※ 부실조합 : 순자본비율 $\Delta 20\%$ 미만

- 부실관련자 민·형사상 조치 강화로 도덕적 해이 방지

- 부실우려조합 '09년 40개에서 '13년까지 15개로 감축(25개 정상화)
 - 이 중 부산시수협 등 8개의 신규 부실조합은 '13년까지 부실완전 해소로 경영정상화

※ 부실우려수협 : 순자본비율 0%~ $\Delta 20\%$

- 회원조합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, 무수익 고정자산 매각, 중앙회 경영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회원조합 추가부실 방지 및 경영개선

□ 경영구조 개편 및 경영혁신 추진

- 수협법 개정에 따른 지도·경제사업 통합 등 조직 및 인력구조 개편으로 비용절감(2개 부서 축소)
- 신용부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'00년 9,887억원의 미처리 결손금 완전해소를 '13년까지 조기 달성(당초 '16년까지)

※ 미처리결손금 : ('00) $\Delta 9,887$ → ('05) $\Delta 6,046$ → ('09) $\Delta 3,574$ → (13)726억원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01년	'05년	'07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
전년도 결손금 (A)	△9,887	△7,293	△4,860	△3,904	△3,574	△2,774	△1,774	△574
세후 당기순이익 (B)	291	1,247	879	330	800	1,000	1,200	1,300
결손금 잔액 (A+B)	△9,596	△6,046	△3,981	△3,574	△2,774	△1,774	△574	726

* 9년('01~'09)동안 6,313억원(년간 약 700억원)의 결손금 감소 실적

** 지도·경제사업의 출자 가능한 자본금은 317억원('01년)에서 1,910억원('09년)으로 증가

□ 인력 감축 및 예산절감 추진

- 수협선진화 계획에 따라 '09년부터 '11년까지 237명 지속 감축
 - ※ 인력감축 : ('09) 77명 → ('10) 82명 → ('11) 78명
- 경상경비 예산 10% 절감 지속 추진('10년, 88억원 절감 가능)
 - 예산 축소에도 어업인 및 회원조합 지원 확대('09 : 136억 → '10 : 230억)
 - ※ 의료지원 등 어업인 복지 및 어선 자동위치발신장치 구축 지원 등

□ 사업부문별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수익 창출

- 회원조합 지자체 금고 취급 추진(지방재정법 개정)
 - 의원입법(김영진, 안경률 의원)으로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중
- 정책보험 사업 규모 확대 및 보험사고 감축 전개
 - 13년까지 대상 품목 확대(넙치, 전복 → 조피볼락, 김, 미역 추가)
- 경제사업부문 수산물 유통가공 인프라 확충 및 수산물 수출 증대
 - 인천물류센터 준공('10.4) 및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추진('12 완공)
 - 바다마트 등 소매기능(22개 점포) 자회사 이관('10.12)으로 경영효율 제고

나 의식개혁 및 윤리경영 실천 과제

□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

- 어업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수준의 윤리준법 의식 함양
 - '반부패 청렴정책 추진' 및 '윤리경영계획' 전사적 실천운동 전개
 - ※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임직원에 대한 형사 고발 의무화('09. 10월 고발기준 신설)
- 업무추진 과정에서 고의·중과실 등으로 손실 발생자에 대한 부실책임 부여

□ 무자격 조합원 정비로 불법선거 방지 및 경영내실화

- 조합원 자격이 없는 어업인들이 조합 임원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경영 간섭 및 임원 선거시 불법선거 조장 사전 차단
 - ※ 무자격 조합원 정비실적('09년) : 3,838명

□ 일선수협 조합장 등 임원선거 불법선거 방지 추진

- 부정선거 사례 발생으로 수협 이미지 훼손방지를 위한 조합 선거 지원단 구성·운영 및 계몽운동 지속 추진

다 정부 공동 추진과제

□ 어촌계 활성화 및 자율관리어업 추진(新수산 30대 프로젝트)

- 정부주관 '어촌계 선진화' 연구용역에 따라 수협 자체 역할 추진
- 수협이 자율관리어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확산 유도

□ 계통상장 유도방안 마련(新수산 30대 프로젝트)

- 정부 연구용역에 따라 적극적인 계통상장제 유도 방안 수립 시행
- 임의상장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등 각종 방안 강구

□ 어업인 인명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운동

- 최근 5년간 연평균 146명의 인명피해를 '14년까지 70명 수준 감축
- 매월 1일을 '어선안전의 날' 지정, 집중 계도로 예방활동 전개
 - 주요 항포구에서 가두캠페인 및 사고대비 가상훈련 등 실시
- ※ 정부, 수협, 해경 등 관계기관 공조체제 구축으로 실효성 확보

□ 신용사업부문 자회사 추진

- 공적자금 조기상환 후 신용사업부문을 자회사로 완전 분리
- 자본조달의 한계 극복 및 국내 유일의 수산은행으로 특화 발전

3

추진과제 T/F 구성 및 점검

□ 수협주관 : 新수협운동위원회(회장 및 대표이사 등) 및 실무 TF (총괄 : 기획관리부장) 구성으로 전사적인 운동 추진

- 매 2주 마다(금요일) 추진과제 실적 제출 및 점검

□ 정부주관 : 월 1회 이상 추진과제 점검회의 개최(수협 참여)

4

기대 효과

□ 재무구조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및 건전경영

- 신용사업부문 미처리결손금 완전 정리로 건전경영 토대 구축
-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통한 중앙회 재무 건전성 확보

□ 어업인 및 회원조합 지원 강화

- 어업인과 회원조합 위주 사업 진행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회원조합 건전경영 토대 마련
- 회원조합 자체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앙회 기능 확대

□ 핵심사업 성장동력 마련

-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중앙회 및 회원조합 신성장 동력 확보
- 수산물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산물 유통 선진화

□ 수협 임직원 의식개혁

- 지속적인 윤리경영 및 나눔경영 실천으로 국민과 어업인을 위해 봉사하는 수협상 확립
-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깨끗한 수협 이미지 확립

【新수협운동 선정과제】

번호	과 제 명	주관부서	협조부서
【대과제 1 : 의식개혁 및 이미지 제고】			
1-1	임직원 윤리경영실천	기획관리부	경제기획부, 준법감시실 등
1-2	나눔경영 실천	준법감시실	기획관리부, 경제기획부
1-3	DIET 운동 전개	기획관리부	경제기획부, 금융기획부
1-4	CI 매뉴얼 개편으로 수협 디자인 개선	홍보실	상호금융부, 공제보험부 등
1-5	新수협운동 캠페인 전개	홍보실	기획관리부, 경제기획부 등
【대과제 2 : 인력 및 조직 혁신】			
2-1	인력감축 지속 실시	기획관리부	경제기획부, 금융기획부
2-2	지도·경제 통합대비 혁신리더 양성 및 전문직군제 운용	기획관리부	경제기획부, 금융기획부
2-3	임금체계 개편	기획관리부	경제기획부, 금융기획부
2-4	지도·경제 통합 후 조직구조 개편	기획관리부 경제기획부	
【대과제 3 : 효율적 예산 집행 추진】			
3-1	전략적 예산 절감 목표 설정	기획관리부	경제기획부, 금융기획부
3-2	프로그램 예산 도입	기획관리부	경제기획부, 금융기획부
【대과제 4 : 어업인·어촌계·회원조합 지원기능 확대】			
4-1	어업인·회원조합 지원예산 지속 확대	기획관리부	경제기획부, 금융기획부
4-2	WTO/DDA 수협 자체대응 강화	수산경제연구원	
4-3	조합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	어업정보통신본부	
4-4	무자격 조합원 정비	회원경영지원부	조합감사실
4-5	회원조합 전산상시감사 확대 운영	조합감사실	상호금융부
4-6	현장중심의 법무세무서비스 체계구축	기획관리부	
4-7	회원조합 자체 경영정상화 지원	회원경영지원부	
【대과제 5 :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자구노력】			
5-1	미처리결손금 조기정리로 재무구조 개선	금융기획부	기획관리부, 경제기획부
5-2	보통출자 및 우선출자 추진	금융기획부	기획관리부, 경제기획부 등
5-3	고정자산 및 보유자산 매각	기획관리부	경제기획부

번호	과 제 명	주관부서	협조부서
【대과제 6 : 경제 및 신용사업 성장동력 확보】			
6-1	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강화	식품사업부	
6-2	국산수산물 수출 증대	직판사업단	
6-3	소매사업장 자회사 이관	경제기획부	바다마트사업부
6-4	경영혁신운동 전개	금융기획부	
6-5	수산금융의 종합금융서비스 기반구축	수산금융부	
【대과제 7 : 어촌 발전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】			
7-1	어촌계 활성화 및 지원기반 구축	회원경영지원부	
7-2	자율관리어업 확산	회원경영지원부	수산경제연구원
7-3	여성 어업인 교육지원 강화	회원경영지원부	
7-4	어촌관광사업 활성화	회원경영지원부	
7-5	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원 확충	수산경제연구원	기획관리부, 금융기획부 등
7-6	어업인 인명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운동	어업정보통신본부	
【대과제 8 : 건전경영을 위한 기반 구축】			
8-1	회원조합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	상호금융부	기획관리부
8-2	회원조합 펀드판매 업무인가 추진	상호금융부	
8-3	자금운용 대상 확대	조합자금부	기획관리부
8-4	부실수협 정책자금 집행기능 및 상호금융 이관	수산금융부 등	회원경영지원부
8-5	정책보험사업 규모 확대 및 보험사고 감축	공제보험부	
8-6	정책보험 국고 및 지방비 보조 확대 추진	공제보험부	
【대과제 9 : 수산물 유통 선진화】			
9-1	수산물 유통가공 인프라 확충	식품사업부	
9-2	계통상장 유도 방안 마련	유통사업부	기획관리부 등
【대과제 10 : 공적자금 조기상환 및 신용 자회사 추진】			
10-1	공적자금 조기상환	금융기획부	
10-2	신용사업 자회사 추진	금융기획부	기획관리부

<별첨 2>

【新수협운동위원회 및 실무 TF 구성도】

